

URBPO 750E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연구*

채진익**

-
- I. 서론
 - II. URBPO의 제정과 그 적용
 - III. URBPO의 주요 조항 내용
 - IV. URBPO의 운용과 그 시사점
 - VI. 결론

주제어 : 무역서비스유틸리티(TSU), 은행지급약정(BPO),
BPO 통일규칙(URBPO)

I. 서론

근래에 SWIFT에서는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전자무역서비스 솔루션(Trade Service Utility : TSU)에 은행의 지급약정을 부여한

* 이 논문은 2013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BPO(Bank Payment Obligations)를 개발했다. BPO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새로운 무역결제수단이다.

2011년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와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전세계은행 간 금융통신협회)가 BPO의 발전을 위해 제휴하기로 하는 획기적인 합의는 ICC가 URBPO를 제정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그 합의의 일환으로 BPO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ICC는 BPO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 URBPO 750E)을 사상 최초로 제정·공표하였으며, 2013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어 시행 중에 있다.

BPO는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데이터가 매치되면 약정된 일자에 수취은행에 대금지급이 이행되는 채무은행¹⁾의 취소 불가능한 지급약정이다. BPO는 신용장거래에서 지급보장은 물론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의 편리성, 신속성 등의 장점을 제공하는 종이 없는 전자무역의 대안으로 도입되었다.²⁾

BPO는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그들의 거래규모를 확대시키고 프로세싱 속도를 향상키는 반면, 거래비용을 감축시킴으로써³⁾ 국제무역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속도 및 융통성 등의 편익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BPO를 선도하는데 있어서 우선 ICC는 세계적으로 산업계의 규칙을 제·개정 및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명성,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수용되는 분쟁해결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반면 SWIFT는 전 세계적인 금융통신망과 메시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기관의 제휴는 무역 솔루션의 개발과 운용에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BPO와 URBPO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고안된 BPO의 도입과 그 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본 논문에서 표현된 용어 “채무은행”은 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 BPO는 은행의 지급약정을 의미하므로, 그 지급약정 이후 제출되는 데이터의 매치 또는 데이터의 미스매치의 승인으로 확정된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은행으로 표현했음을 알려둔다.

2) Madhav Goparaju, Kersten Martin Meyer and Carol Chiu, “Five specialists analyze the new BPO rules”, *DCInsight*, Vol.19 No.2, April-June 2013, p. 9.

3) Merlin Dowse, “Don't wait for your customer to ask about the BPO”, *DCInsight*, Vol.19 No.2, April-June 2013, p. 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PO의 운용과 이에 적용되는 URBPO와 그 조항에 대해 검토해 보고, 또 그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URBPO는 최초의 규칙이고 그 운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본 규칙의 현장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차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분석하기로 한다.

II. URBPO의 제정과 그 적용

1. URBPO의 제정과 도입

국제무역에서 BPO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ICC와 SWIFT는 2011년 9월 토론토(Toronto), Sibos(SWIFT 국제세미나)에서 협력약정에 서명했다.⁴⁾ 두 기관의 목표는 BPO를 기술 중립적인 전 업계의 무역방법으로 정착·발전시키고, 통일규칙과 메시징 표준을 포함하여 표준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⁵⁾ 따라서 ICC와 SWIFT는 제휴를 통하여 글로벌 무역금융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⁶⁾

이에 따라 ICC 은행위원회는 공급체인금융의 급속한 발전에 대비하여 관련 모든 분야의 합리적인 기대를 고려하여 선도적인 금융통신 메시징 제공업자인 SWIFT와 제휴하여 URBPO를 사상 최초로 공표했다.⁷⁾ 따라서 공급체인금융에서 21세기 표준인 ICC의 URBPO는 전 세계적으로 BPO를 규율하는 최초의 BPO 통일규칙이다.⁸⁾

URBPO는 2011년 10월 베이징 회의에서 그 초안이 ICC 은행위원회에 제

4) ICC,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Version 1.0*, Pub. 750E, 2013, p. 3.

5) SWIFT, "The Value of SWIFT to the Financial Supply Chain", Issue 7 Q 1 2012, p. 2.

6) Andre Casteman, "Accelerating Global Trade Finance", SWIFT, Jan. 23, 2012, p. 1.
: 채진익, "ICC/SWIFT의 협력적 공급체인금융 솔루션의 운용현황과 그 전망", 무역연구, 한국무역연구원, 제9권 제4호, 2013. 9, p. 172.

7) ICC, *op. cit.*, p. 3.

8) T. O. Lee Consultants Ltd., "Introduction to and Comments on Bank Payment Obligation(BPO)", 2011. 9, p. 3.

출되었으며, 그 이후 구체적인 진행보고서는 2012년 도하(Doha) 회의에 제출되었다.⁹⁾ 2012년 6월에는 ICC 국내 위원회에 초안과 안내문을 공개했으며, 동년 7월에는 21개 ICC 국내 위원회로부터 상세한 의견서를 접수하였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2차 초안을 ICC 국내위원회에 공개했다. 그 이후 상황적 변화를 반영하여 조항문언을 업그레이드해 왔다.¹⁰⁾

그리고 본 규칙은 2013년 4월 17일 리스본(Lisbon)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¹¹⁾ ICC 은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ICC는 이와 같은 협업적 노력으로 은행업자, 이용자 및 공급체인금융의 모든 구성원들 간 광범위한 합의를 반영하여 본 규칙을 발표했다.¹²⁾ 그리고 URBPO는 2013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본 규칙은 이와 같이 18개월 동안의 입안과정을 걸쳐 세심하게 준비되었으며, 많은 ICC 구성그룹(constituent group) 공동 노력의 결과이다. ICC 국내 위원회는 의견을 구하기 위해 배포되었던 3개 초안에 관해 귀중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입안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이들 중 많은 의견과 제안이 최종 문안을 포함한 그 이후 입안에 채택되었다. 또한 ICC URBPO 자문그룹은 초안 문안을 검토하고 많은 국내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조언과 지원을 했다. 국내 위원회와 자문그룹에 의해 제시된 모든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안이 완성되었다.¹³⁾

2. URBPO의 범위

URBPO는 UCP 600이 화환신용장의 “프레임워크”(framework)로 제공하는 것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그러나 URBPO는 참여

9) David Meynell, “The BPO: a banker's perspective”, *DCInsight*, Vol.18 No.2, Apr-June 2012, p. 15.

10) ICC URBPO Drafting Group, “Bank Payment Obligation: URBPO Draft 2”, 2012. 11, p. 3.

11) Andre Casterman, “The BPO update”, *DCInsight*, Vol.18 No.3, July-Sept. 2012, p. 2.; 채진익, 전계논문, p. 176.

12) ICC, *op. cit.*, 750E, p. 7.

13) *Ibid*, p. 3.

은행과 TMA(Transaction Matching Application : TMA) 간의¹⁴⁾ 상호작용(데이터 교환)에만 제한된다. URBPO는 약정된 거래를 위해 금융기관(URBPO에서 참여은행으로 알려진)이 채택한 소위 TMA와 같은 ‘협업적’ 공간에서 적용하도록 고안되었다.¹⁵⁾ 이것은 2011년 9월에 ICC와 SWIFT 간의 양해각서에서 합의된 범위와 일치한다.¹⁶⁾

은행 간 상호작용은 은행이 데이터 매칭을 위해 공동의 TMA를 이용하는 협업적 공간범위 이내가 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해 본 규칙은 분명한 지침을 제공한다. 은행은 BPO의 설정에 있어서 공유기반의 TMA를 통하여 약정된 데이터 요소의 매칭을 조건으로 은행 간 협업이다. 따라서 모든 은행은 동일한 TMA에 참여하거나 또는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¹⁷⁾

매도인과 매수인 간 계약 및/또는 서류의 교환에 적용되는 의무적인 규칙이나 표준은 없다. 이들 교환은 통상적으로 종이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과 은행 간의 데이터 교환에 적용되는 의무적인 규칙이나 표준이 없다. 이들 데이터는 어떠한 표준과 포맷을 이용하여 관련 당사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선호되는 채널(channel)을 통하여 교환될 수 있다.¹⁸⁾

본 규칙 제1조 a항에서는“URBPO는 BPO의 프레임워크를 규정하고 있다. BPO는 참여은행이¹⁹⁾ 동일한 거래매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설정된 베이스라인(baseline)²⁰⁾에 참여하기로 한 합의에 관련하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14) “거래매칭 애플리케이션” 또는 “TMA”는 참여은행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중앙처리 데이터 매칭 및 워크플로우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한다. 그것은 참여은행으로부터 접수한 TSMT 메시지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그 메시지에서 명시된 데이터가 자동화적으로 대조된 후에 관련 모든 TSMT 메시지를 각각의 참여은행에 전송한다(URBPO Art. 3).

15) ICC, *op. cit.*, 750E, p. 7.

16) ICC, *THE ICC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 Pub. 751E, 2013, pp. 76~77.

17) ICC, *op. cit.*, 750E, p. 7.

18) ICC, *op. cit.*, 751E, p. 55.

19) “참여은행”은 매도인의 은행 또는 수취은행(주어진 어느 기간이든 그의 역할에 달려 있는), 매수인의 은행, 채무은행 또는 제시은행을 의미한다(URBPO Art. 3).

20) “베이스라인”(baseline)은 매수인의 은행 또는 매도인의 은행이 거래매칭 애플리케이션에 제출한 기초 무역거래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설정된 베이스라인”은 거래매칭 애플리케이션이 제로(zero) 미스매치를 포함하고 있고 ‘설정된’ 상태의 베이스라인 매

기초 무역거래에 관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조 b항에서는 “URBPO는 데이터의 매치 또는 미스매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으며, 그 일치 여부는 그 TMA의 기능과 각 참여은행이 약정한 TMA에 적용되는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초 무역거래에 관계”라는 문언의 포함은 기초계약과의 어떠한 관계를 유추하거나 URBPO 제6조(은행 지급약정 vs. 계약) 및 제7조(데이터 vs. 서류,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²¹⁾

본조의 정의에서 BPO와 화환신용장 간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BPO의 수익자 또는 수취인은 항상 매도인 은행이 될 것이다. 그 은행은 매도인을 위해서 대금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BPO의 버전 1.0 하에서는 매도인은 결코 BPO의 직접적인 수익자 또는 수취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제도에서는 궁극적으로 매도인 은행은 매도인에게 대금(value)을 전달한다는 정확한 조건은 이들 두 당사자 간에 존재해야 하는 서비스 약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URBPO의 향후 버전에서는 BPO의 수취인이 되는데 매도인 은행 이외의 당사자(예컨대 다른 은행 또는 궁극적으로 매도인 자신)를 허용하기 위해 개정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²²⁾

3. URBPO의 적용과 해석

URBPO 제2조 a항에서는 “베이스라인 내에 BPO 세그먼트(segment)에서 URBPO를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각 참여은행이 BPO는 URBPO를 적용한다는 개별약정에 합의한 경우에 URBPO는 BPO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URBPO는 설정된 베이스라인 또는 개별약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배제하기로 하지 않는 한, 각 참여은행을 구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PO에 대한 명세는 설정된 ‘베이스라인’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급약정 세그먼트에만 명시되어야 한다. BPO의 발행자는 채무은행이며, 그 채무은행은 매

치 보고서를 발송하는 때부터 베이스라인을 의미한다(URBPO Art. 3).

21) ICC, *op. cit.*, 751E, p. 76.

22) *Ibid.*, p. 77.

수인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베이스라인은 BPO의 발행(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설정될 수 있다. 베이스라인이 BPO 약정 없이 초기 설정된 경우에는 BPO는 후에 채무은행과 수취은행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추가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BPO의 수익자는 수취은행으로 알려진 은행이다. 현 규칙 하에서 수취은행은 항상 매도인 은행이 된다. 한편 UCP 및 URDG와 같은 ICC의 다른 규칙과 마찬가지로 URBPO는 모든 참여은행의 합의에 의해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은 URBPO를 적용하거나, 수정 또는 배제할 것인지를 그들 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²³⁾

그리고 본조 b항에서는 “설정된 베이스라인 또는 개별약정이 URBPO의 적용 가능한 버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베이스라인이 본 규칙 제9조 d항에 따라서 설정된 경우, BPO는 시행 중인 최근 버전이 적용된다. 본 규칙은 URBPO의 버전 1.0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UCP와 마찬가지로, URBPO는 전자 솔루션이 전통적인 종이버전 보다 더 빠르게 진화·발전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버전번호가 부여된다.²⁴⁾ 즉 URBPO는 개별 조항이 업계관습의 변화를 반영하고, 완전한 개정의 필요성 없이 업그레이드 및 추가·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eUCP와 마찬가지로 버전 번호로 공표된다.²⁵⁾

본 조항은 eUCP 제1조 c항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eUCP는 신용장이 eUCP를 적용한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 UCP의 보칙으로 적용된다(eUCP Art. 1(b))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URBPO는 UCP와는 완전 별개의 거래이기 때문에 UCP와는 관계가 없다.

URBPO 제2조 c항은 “URBPO는 국제표준기구(ISO)²⁶⁾에 등록된 적법한 ISO 20022 무역서비스관리(TSMT)²⁷⁾ 메시지의 사용을 요구한다. BPO에 적

23) *Ibid*, pp. 79~80.

24) *Ibid*, p. 79.

25) ICC, *op. cit.*, 750E, p. 9.

26) ISO는 국제표준화기구이며, 160개 이상의 국가표준단체(national standard bodies) 회원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표준의 개발자이며 공표기관이다(ICC, 750E).

27) “Trade Services Management(TSMT) 메시지” 또는 “TSMT 메시지”는 국제표준화기구

용되는 TSMT 메시지만이 이들 규칙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CC URBPO 규칙은 은행과 중앙 매칭 애플리케이션인 TMA 간 공동의 메시징 표준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²⁸⁾ 따라서 URBPO와 ISO 20022 TSMT 메시징 표준의 채택은 필수적이다.²⁹⁾

그리고 본 규칙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수형의 단어는 복수형을 포함하고 복수형의 단어는 단수형을 포함한다. 다른 국가에서의 어떤 참여은행의 지점은 별개의 독립된 은행으로 본다(URBPO Art. 5). 본조는 UCP 600 제3조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URBPO의 주요 조항 내용

URBPO는 제16조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 장에서 이미 언급한 제1조의 범위와 제2조의 적용 및 제3조의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한 해석을 비롯하여 주로 각주에서 언급한 제4조의 일반 정의 및 제5조의 메시지 정의, 그리고 본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6조에서 16조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URBPO의 조문 구성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범위	제9조	참여은행의 역할
제2조	적용	제10조	채무은행의 약정
제3조	일반 정의	제11조	조건변경
제4조	메시지 정의	제12조	데이터의 효력에 대한 면책
제5조	해석	제13조	불가항력
제6조	BPO v. 계약	제14조	거래매칭 애플리케이션의 이용불가능
제7조	데이터 v. 서류,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	제15조	준거법
제8조	BPO 유효기일	제16조	대금양도

(ISO)가 무역서비스 관리 비즈니스 분야로 발행된 ISO 20022 메시지 유형을 의미한다 (URBPO Art. 3).

28) Andre Casterman, "The future of Bank Payment Obligation(BPO)", *DCInsight*, Vol. 19 No. 3, July-September 2013, p. 3.

29) ICC, *op. cit.*, 751E, p. 78.

1. BPO의 독립성

BPO는 그 기초가 되는 상거래와는 분리·독립되어 있으며, 항상 TSU 거래만을 의미한다.³⁰⁾ URBPO 제6조에서는 “BPO는 그 기초 무역거래가 근거가 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별개이며 독립적이다. 참여은행은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참조사항이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또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채무은행의 지급약정은 참여은행 또는 매도인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한 매수인의 클레임 또는 항변에 지배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취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과 그 매수인의 은행 또는 그 매수인 은행 이외의 채무은행 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BPO가 기초 매매계약으로부터 BPO의 분리 및 독립적 성격을 보여주며, UCP 600 제4조에 표현된 문언 및 원칙을 따르고 있다.³¹⁾ 즉, 본조는 UCP 600 제4조의 조항과 유사한 맥락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URBPO 제7조에서는 “참여은행은 데이터를 취급하는 것이며 그 서류, 또는 데이터 또는 서류가 관련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데이터는 대부분의 경우에 존재하게 되는 물리적인 서류에 기초하거나 또는 그들 서류로부터 발췌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은행은 자신이 입력 또는 수취하는 그 데이터와 관련될 수 있는 그들 서류,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본 규칙은 이에 대한 일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³²⁾

당사자가 합의한 거래의 지급조건으로 BPO의 채택이 서류대체 또는 그 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경우에 물리적인 서류는 물리적 공급체인 프로세스의 일부로 계속해서 이용되고 교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류의 물리적인 교환과 병행하여 데이터는 BPO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TMA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발췌되고 제출될 것이다. 이는 URBPO가 eUCP와

30) Robert Marchal, "The Trade Services Utility: latest developments", *DCLInsight*, Vol.16 No.1, January-March 2010, p. 22.

31) ICC, *op. cit.*, 751E, p. 87.

32) *Ibid*, p. 88.

구별되는 측면이다.³³⁾

eUCP는 종이서류의 전자제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UCP 600에 대한 보완규칙으로 역할을 하는 반면, URBPO는 주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종이서류로부터 추출된 데이터의 전자제시와 매칭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규정하고 있다.³⁴⁾

2. 참여은행의 역할

URBPO 제9조에서는 참여은행이 본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유로 영업을 종료한 날에 TSMT 메시지를 접수한 때에는 그 TSMT 메시지는 그 다음 첫 은행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참여은행이 TMA가 발송한 메시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그 참여은행은 지체 없이(without delay) 그렇게 해야 한다. 참여은행이 TMA에 제출한 모든 데이터는 기초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에 대해 매수인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접수한 데이터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 참여은행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RBPO Art. 9, abc).

본조에서는 메시지 수·발송에 대한 참여은행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불가항력적 사고에 기인한 사유가 아닌 주말, 국경일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TSMT 메시지는 여전히 전송될 것이라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메시지는 다음 은행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³⁵⁾

본 규칙 제9조 b항에서는 TMA로부터 어떠한 행동을 요구받는 메시지를 접수하는 하는 은행은 지체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TMA는 또한 그의 표준 서비스의 일부로 당해 거래 프로세싱에 정해진 워크플로우 범위 내에서 미결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게 주기적인 독촉장을 발송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은행은 데이터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는 데이터는 접수된 상태를 항상 반영해야 한다는 UCP 제9조 b항 및 c항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³⁶⁾

33) *Ibid.*

34) *Ibid.*

35) *Ibid.*, p. 90.

본조에서 언급한 용어 “지체 없이”의 사용에 대해서는 명료한 정의는 없지만, UCP 600 제9조(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에서 표현된 개념과 의미가 일치한다. 본 조항의 의미는 수취된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요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반드시 지급이행은 아니다. 실제로 은행에 약정된 기간에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은 없다. 따라서 “지체 없이”라는 문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표현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개별적으로 그들의 서비스업자와 약정된 기간에 이행하도록 효과적으로 강제하는 조건을 합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개별적인 협상의 문제이다.³⁷⁾

그리고 본조 d항에서 참여은행이 그의 역할을 수락한 결정에 대해 약속하고 있다. 매수인 은행이 한 은행이고 유일한 채무은행인지, 매수인 은행 이외의 어떤 은행이 한 은행이고 유일한 채무은행인지 또는 다수의 채무은행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³⁸⁾ 본조 제9조 d항에서는 “BPO를 편입하는 베이스라인은 다음의 경우 각 참여은행이 그의 역할을 승낙한 후에만 설정된 베이스라인이 된다. a. 매수인의 은행이 유일한 채무은행일 경우이다. … b. 매수인의 은행 이외 채무은행이 유일한 채무은행일 경우이다. … c. 매수인의 은행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채무은행이 있는 경우이다. … 그러한 통지의 발송은 TMA가 제로 미스매치의 베이스라인 매치 보고서를 발송한 다음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채무은행의 약정

1) 베이스라인 설정과 지급약정의 효력

BPO는 채무은행의 취소불능이며 독립적인 지급약정이다. BPO는 TMA, 즉 중앙 데이터 매칭 및 워크플로우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을 통하여 설정(발행)된다. 일단 BPO가 설정되면, BPO는 준거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유효하고 구속·강제력

36) *Ibid.*, p. 91.

37) *Ibid.*

38) *Ibid.*

있는 수취은행에 대한 채무은행의 지급약정을 구성한다.³⁹⁾

URBPO 제10조 a항 i호에서는 채무은행은 베이스라인 매치보고서가 “설정된” 상태가 표시되는 때부터 구속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본 규칙 제10조 a항에서 “채무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BPO에 근거하여 취소불능으로 구속된다. i) 베이스라인이 설정될 당시에, BPO가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편입되는 때이다. TMA는 본 규칙 제9조 d항에 의거하여 제로 미스매치의 베이스라인 매치보고서 또는 “설정된” 상태의 역할 및 베이스라인 승인통보 중 어느 하나를 각 참여은행에 발송한 때이다. ii) 또는 BPO가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조건 변경으로 편입되는 때이다, TMA는 본 규칙 제11조 c항에 따라 조건변경 승인통보 또는 역할 및 베이스라인 승인통보 중 어느 하나를 각 참여은행에 발송한 때이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급약정과 지급시기

URBPO는 채무은행이 데이터가 매치된 후에 지급하거나 또는 연지급 약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한데 있어서 그 일정(timeline)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본 규칙 제10조 c항 및 e항에서는 대금지급의 시기를 포함하여 BPO 하에서 지급결제는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명시된 지시에 따라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⁴⁰⁾

또 URBPO는 대금지급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기간을 강제해야 한다고 언급하는데 있어서 논점이 있다. 베이스라인은 지급명세를 기입하기 위한 필드가 있다. 각각의 상황에서 이들 명세는 채무은행이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URBPO는 모든 BPO 거래에 대해 표준적인 지급관행(payment practice)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⁴¹⁾

이에 대해 본 규칙 제c항은 “채무은행은 설정된 베이스라인의 지급약정 세그먼트에 명시된 지급조건에 따라 수취은행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연지급 약정을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급해야 한다. 단,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명

39) ICC, *op. cit.*, 750E, p. 8.

40) ICC, *op. cit.*, 751E, p. 94.

41) *Ibid.*

시된 BPO의 유효기일 이전에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요구한 모든 데이터 셋을⁴²⁾ 제출하여, 그 데이터를 대조한 후에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i) 데이터가 매치되는⁴³⁾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급약정 범위

각 BPO는 단일의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포함하고 있으나, 그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하나 이상의 채무은행이 있을 수 있다(URBPO 10(b)). 각 BPO는 관련 채무은행의 지급약정이다. BPO에 대한 채무은행의 지급약정은 당해 BPO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은행은 그 자신에 관련되는 BPO의 금액만큼 구속되며, 동일하게 설정된 베이스라인 상에서 다른 채무은행의 대금지급 여부에 관계없다. 그 약정의 해제는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해제해야 한다. 즉 지급약정의 취소는 본 규칙의 범위 밖이다.⁴⁴⁾

본 규칙 제10조 d항은 “i) 수취은행에 대한 채무은행의 총 지급의무 금액은 그의 BPO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i) 제출(submission)⁴⁵⁾ 서비스 또는 이행에 있어서 분할선적 또는 분할공급에 해당할 경우, 그 제출에 대해서 채무은행의 수취은행에 대한 BPO상 지급의무 금액은 본 규칙 제10조 (d)항 iii호에 의거하여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반영된 총 금액에 대비 그 제출의 가액에 비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지급의무 금액은 당해 BPO의 잔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iii) 설정된 베이스라인이 하나 이상의 BPO를 편입할 때, 제출에 대한 각 채무은행의 수취은행에 대한 지급의무 금액은 그 설정된 베이스라인

42) “데이터 셋”은 참여은행이 설정된 베이스라인과 대조를 위해 거래매칭 애플리케이션(TMA)에 발송한 제출된 데이터 셋에 포함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명세(예컨대 ‘상거래’(commercial : 송장), ‘운송’, ‘보험’, ‘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를 의미한다(URBPO Art. 3).

43) “데이터 매치”는 요구된 모든 데이터 셋을 설정된 베이스라인과 대조한 결과 데이터 셋 매치 보고서에 명시된 미스매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URBPO Art. 3).

44) *Ibid.*, pp. 94~95.

45) “제출”(submission)은 (i) 거래매칭 애플리케이션에 베이스라인을 제출함으로써 데이터를 제시하는 매수인의 은행 또는 매도인 은행의 행위, 또는 그 조건에 따라 그와 같이 제출된 베이스라인, 또는 (ii) 거래매칭 애플리케이션에 하나 이상의 데이터 셋을 제시하여 채무은행에 데이터를 제시하는 참여은행의 행위, 또는 그 조건에 따라 그와 같이 제출된 데이터 셋을 의미한다(URBPO Art. 3).

에 반영된 총액 대비 당해 BPO의 금액에 비례한다. iv) 설정된 베이스라인이 하나 이상의 BPO를 편입할 때, 연대 약정은 채무은행 간에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PO 하에서 채무은행의 약정이행은 어느 상대방으로부터 상환 받을 그의 권리 또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URBPO Art. 10(e)).

4) 데이터의 미스매치와 그 승인

URBPO 제10조 g항에서는 “채무은행은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 데이터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그 미스매치가 매수인 은행 또는 그 매수인 은행 이외의 다른 채무은행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에는 지급하거나 또는 만기에 지급하기로 하는 연지급 약정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서는 데이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다.⁴⁶⁾

그러나 데이터 미스매치가 있는 경우, TMA가 미스매치 승인통지를 발송하면 채무은행은 구속된다. BPO 거래에서 미스매치인 경우에는 채무은행이 데이터 미스매치를 승인함으로써 그의 의무를 지속하기 위한 결정은 그 이외의 다른 채무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스매치를 수리하는 은행은 채무은행이 아닌 매수인 은행이다. 그러나 채무은행은 그의 지속적인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⁴⁷⁾

이에 대해 URBPO 제10조 c항에서는 다음의 경우 채무은행은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ii) 데이터 미스매치가 있고 매수인의 은행이 유일한 채무은행인 경우, 수취은행에 미스매치 승인통지⁴⁸⁾를 발송함으로써 매수인 은행이 그 미스매치 승인을 TMA가 인정하는 때, 또는 iii) 데이터 미스매치가 있고 매수인 은행이 아닌 채무은행이 유일한 채무은행인 경우, 채무은행과 제출은행

46) *Ibid.*, p. 95.

47) ICC URBPO Drafting Group, "Bank Payment Obligation: *URBPO Draft 2*", 2012, 11, p. 18.

48) “미스매치 승인”은 매수인의 은행이 데이터 미스매치를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TMA에 발송한 TSMT 메시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미스매치 승인 통지”는 매수인의 은행이 TMA에 데이터의 미스매치를 승인하는 통지 내용을 TMA가 각 참여은행에 전송한 TSMT 메시지를 의미한다(URBPO Art. 4).

(해당되는 경우)이 역할 및 베이스라인 승인을 TMA에 발송함으로써 그의 역할을 확인하고, TMA가 각 참여은행에 역할 및 베이스라인 승인통지를 발송함으로써 그 승인을 인정하는 때이다. 그러한 통지의 발송은 TMA가 미스매치 승인통지를 각 참여은행에 발송함으로써 매수인 은행의 미스매치 승인을 인정한 후에 한다. 또는 iv) 데이터 미스매치가 있고 매수인 은행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채무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a) TMA가 각 참여은행에 미스매치 승인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매수인 은행의 미스매치 승인을 인정하는 때, 그리고 b) 채무은행과 제출은행(해당되는 경우)이 TMA에 역할 및 베이스라인 승인을 발송함으로써 그의 역할을 확인하고, TMA가 각 참여은행에게 역할 및 베이스라인 승인통지를 발송함으로써 그 승인을 인정하는 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BPO의 유효기일과 유효성

설정된 베이스라인은 데이터 셋의 제출을 위한 유효기일을 명시해야 한다. 설정된 베이스라인이 요구한 모든 데이터 셋은 그 유효기일의 협정 세계시(UTC) 23시 59분 59초 내에 TMA에 접수되어야 한다(URBPO Art. 8(a)(b)). 그 데이터의 제출은 완전한 데이터이며, 은행의 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데이터가 수취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⁴⁹⁾

여기에서 UCP 600 제6조와 유사하게 BPO의 유효기일은 데이터 제출을 위한 최종 기일이며, TMA의 매칭 프로세스를 종료하기 위한 기일이 아니다. 전자적 환경에서 데이터의 취급은 규정된 영업시간 범위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는 은행의 제약을 제거한다. 그리고 UTC(협정 세계시)의⁵⁰⁾ 사용은 글로벌 기준으로 일관성 있는 표준 타이밍 프로토콜의 채택을 허용한다.⁵¹⁾ 그 유효기간 이후에 데이터 셋(set)을 제시한다면 데이터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49) ICC URBPO Drafting Group, *op. cit.*, p. 18.

50) “협정 세계시”(Universal Time coordinated) 또는 “UTC”는 전기 컴퓨팅 및 데이터 관리 장치(equipment)에 사용된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해 정의된 국제시간기준(scale)을 의미한다. 기술적으로 GMT(그리니치 표준시)에 상응하고, BPO를 위해 적용되는 시간 기준이다(URBPO Art. 3).

51) ICC, *op. cit.*, 751E, p. 89.

그리고 데이터 대조는 설정된 데이터 베이스라인이 요구한 모든 데이터 셋이 제시된 후에 이행된다. 그 다음에 TMA는 데이터 매치 인지 또는 데이터 미스매치 인지 그 결과를 알리는 데이터 셋 매치 보고서를⁵²⁾ 각 참여은행에게 발송한다(URBPO Art. 8(c)).

한편 URBPO 제10조 f항에서 BPO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BPO는 데이터가 매치되거나 또는 본 규칙 제10조 c항에 따라 데이터 미스매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요구한 모든 데이터 셋이 제출되기 이전에 유효기일이 되는 때, 또는 채무은행의 약정해제를 위해 설정된 베이스라인의 조건이 변경된 때, 또는 BPO의 조건에 따라서 당해 BPO가 완전히 지급된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4. 조건변경

BPO 거래에서도 참여은행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이 가능하다. URBPO 제11조에서는 BPO의 조건변경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우선 본조 a항과 b항에서는 베이스라인의 조건변경 프로세스와 설정된 베이스라인의 조건변경에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를 다룬다.⁵³⁾

본 규칙 제1조 a항에서는 “BPO를 편입한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대한 조건변경 또는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BPO를 편입시키기 위한 조건변경은 참여은행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 b항에서는 “매도인 은행 또는 수취은행(해당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 은행은 베이스라인 조건변경 요청을 발송함으로써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대한 조건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매도인 은행 또는 수취은행(해당되는 경우) 또는 해당되는 경우, 매수인 은행은 조건변경 승인을 발송함으로써 베이스라인의 조건변경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승인 후에, TMA는 채무은행이 자신에게 역할 및 베이스라인 승인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그 거래에서 각 채무은행의 역할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면서, 완전 이행보고서

52) “데이터 셋 매치보고서”는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요구한 모든 데이터 셋을 제시하여 그 데이터 셋을 그 설정된 베이스라인과 자동적으로 대조한 후에, TMA가 데이터 매치 또는 데이터 미스매치 중 어느 하나를 통지하는 내용으로 참여은행에게 송신한 TSMT 메시지를 의미한다(URBPO Art. 4).

53) *Ibid.*, p. 96.

를 각 채무은행과 제출은행(해당되는 경우)에 송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조 c항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변경 승인에 대한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즉 “BPO를 편입하고 있는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대한 조건변경 또는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BPO를 편입하기 위한 조건변경은 다음의 경우 유효하다. i) 매수인의 은행이 유일한 채무은행인 경우는 TMA가 조건변경 승인에 대한 회신으로 채무은행에 조건변경 승인 통지를 발송한 때, ii) 매수인의 은행 이외의 채무은행이 유일한 채무은행인 경우는 TMA가 그 채무은행 및 제출은행(해당되는 경우)이 완전 이행보고서에 포함된 그 베이스라인에 명시된 대로 그의 역할을 승인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역할 및 베이스라인 승인통지를 각 참여은행에게 발송할 때, iii) 매수인 은행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채무은행이 있는 경우, TMA가 각 채무은행과 제출은행(해당되는 경우)이 조건변경을 승인한 다음에 그의 역할을 확인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행보고서에 대해 역할 및 베이스라인 승인통지를 각 참여은행에게 발송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조 d항에서는 베이스라인의 조건변경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의 프로세스를 기술하고 있다. 즉 “어떠한 참여은행이 조건변경 거절 또는 역할 및 베이스라인 거절(해당되는 경우)을 발송함으로써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대한 요청된 조건변경을 거절하고, TMA가 조건변경 거절통지 또는 역할 및 베이스라인 거절통지⁵⁴⁾(해당되는 경우)를 각 다른 참여은행에 발송하는 때에는 설정된 베이스라인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면책/불가항력/기타 조항

1) 데이터의 효력에 대한 면책

URBPO 제12조는 데이터의 효력에 대한 면책으로, 그 문언은 서류의 유효성에 관한 UCP 600 제34조에서 이용된 문언에서 왔다.⁵⁵⁾

54) “역할 및 베이스라인 거절”은 제출은행 또는 매수인의 은행 이외에 채무은행이 완전 이행보고서에 포함된 베이스라인에 명시된 대로 그러한 은행의 역할을 거절한다는 내용으로 TMA에 전송한 TSMT 메시지를 의미한다(URBPO Art. 4).

55) *Ibid.*, p. 97.

URBPO 제12조에서는 “참여은행은 다음에 대해 어떠한 의무나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i)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접수한 모든 데이터의 출처, 정확성, 진정성, 위조성 또는 법적 효력, ii) 서류, 또는 그러한 데이터에 관련하는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 이행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 또는 iii) 물품의 송화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화인 또는 보험자, 또는 모든 데이터에 언급된 기타 당사자의 성실성 또는 작위 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이행능력 또는 신용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불가항력

URBPO 제13조에서는 불가항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규칙에서 불가항력의 개념은 다른 ICC 규칙에서의 개념과 동일하나, 참여은행의 TMA에 접속 불가능을 커버하는 것까지 확대되었다. 본 규칙 제13조는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 예컨대 UCP 600 제36조(불가항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소 표준적인 문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항은 한 가지 이상의 진술된 사유로 참여은행의 TMA에 접속 불가능을 커버하는데 까지 확장된다. 본 규칙 제13조 b항은 데이터 셋이 제출된 후에 데이터 매치 또는 미스매치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채무은행의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일단 채무은행이 영업을 재개하면 지급하거나 또는 연지급 약정을 부담해야 한다. 제출은행 또는 다른 참여은행이 그의 역할을 종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는 제13조 제c항에 약술되어 있다.⁵⁶⁾ URBPO 제13조에서는 “a. 참여은행은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테러 행위로 야기된 TMA에 접속 불가능, 또는 장비, 소프트웨어 또는 통신 네트워크의 고장을 포함하여 은행의 업무중단, 또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비, 소프트웨어 또는 통신 네트워크의 고장을 포함한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b. 본 규칙 제13조 a항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업이 재개되면 채무은행은 본 규칙 제10조 c항에 따라 당해 채무은행의 그러한 영업중단 중에 만기가 되고, 당해 BPO의 유효기일 이전에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56) *Ibid.*, pp. 96~98.

서 요구된 모든 데이터 셋이 제출되어 있고, 그 데이터가 매치되거나 또는 미스매치 승인이 있는 BPO에 대해서는 수취은행에 지급 또는 연지급 약정을 부담하고 만기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존속한다. c.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제출은행 또는 (본 규칙 제13조 c항에 의거하여) 또 다른 참여은행은 TMA에 특별요청을⁵⁷⁾ 발송함으로써 설정된 베이스라인에서 그의 역할을 종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TMA는 각 참여은행에게 특별 통지를⁵⁸⁾ 발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칙 제13조 a항은 UCP 600 제36조와 일부 유사하나, URBPO는 전자 거래 및 시스템 거래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타 조항

이미 기술한 조항 이외에도 제14조(거래매칭 애플리케이션의 이용 불가능), 제15조(준거법) 및 제16조(대금 양도)가 있다.

우선, URBPO 제14조에서는 거래매칭 애플리케이션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 참여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ICC Guide). 즉, 참여은행은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TMA의 이용 불가능으로 야기되는 결과에 대한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URBPO 제15조(준거법)에 있어서는 URBPO를 해석하고 시행할 때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 확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 규칙 제15조 a항은 BPO에 관한 준거법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URDG(2010) 제34조와 동일한 지침원칙(guiding principles)을 따르고 있다. 본조 b항은 ISP98 규칙 제1.02(a)로부터 채용되었다.⁵⁹⁾

본 규칙 제15조는 “BPO의 준거법은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약정된 채무은행의 지점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장소의 준거법으로 한다. URBPO는 준거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준거법을 보완한다. 그리고 채무은행이 준

57) “특별 요청”은 (본 규칙 13조에 따라)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출은행이 (i) 데이터 셋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 통지, 또는 (ii) 참여은행이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있는 그의 역할의 철회를 TMA에 발송한 TSMT 메시지를 의미한다(URBPO Art. 4).

58) “특별한 통지”는 다른 참여은행이 TMA에 송신한 특별요청의 통지를 그 TMA가 참여은행에 전송한 TSMT 메시지를 의미한다(URBPO Art. 4).

59) *Ibid.*, p. 99.

거법 또는 규제사항(regulatory requirements)에 의하여 그의 약정준수에 제한을 받는다면, 채무은행은 BPO 하에서 그 약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의무 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BPO의 대금양도에서는 현행 규칙에서 매도인 은행은 BPO의 수취은행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유일한 은행이다. 수취은행이 매도인에게 금융제공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본 규칙 제16조는 수취은행이 UCP 600 제39조(양도)에서 적용하는 양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은행에게 청구권 또는 대금을 이전 또는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URBPO의 범위 내에서는 매도인 은행이 아닌 어느 은행에게 수취은행으로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편익은 없지만, 이는 채무은행으로부터 기일이 되는 BPO 대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는 URBPO가 아닌 별개의 계약과 준거법에 의거하여 수취은행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⁶⁰⁾

본 규칙 제16조에서는 “준거법의 조항에 따라서, BPO의 조건으로 수권되거나 또는 수권될 수 있는 모든 대금을 양도할 권리가 있다. 본 조항은 대금의 양도에만 관계하며, 설정된 베이스라인 상에서 수취은행의 역할을 다른 은행에 양도하는 것에는 관계하지 않는다(본 규칙 제11조에 따라서 설정된 베이스라인에 대한 조건변경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채무은행은 자신이 동의할 때까지 그러한 양도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V. URBPO의 운용과 그 시사점

1. URBPO의 운용과 그 의의

TSU는 원칙적으로 오픈 어카운트 방식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또 이를 위한 매칭 및 워크플로우 솔루션이다. 근래에는 시장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기에 지급약정을 부여한 솔루션이 BPO이다.⁶¹⁾

60) *Ibid.*, p. 100.

61) 채진익,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SWIFT의 TSU BPO의 도입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한국 무역상무학회, 제49권, 2011, p. 420.

BPO는 무역수단으로써 지급약정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기본 메커니즘은 전통적인 신용장과 유사하다.⁶²⁾ 여기에서 핵심적인 차이점은 BPO는 물리적인 종이서류의 심사와는 달리 구조화된 메시지의 비교(대조) 및 매칭에 의존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환경에서 운용된다.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무역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량은 산업의 효율성 관점에서 의미 있는 약진을 의미한다.⁶³⁾

실무적으로 BPO는 이와 같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의 매칭은 시스템화 된 전자적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매칭 여부의 결과는 분명하다. 종이서류의 물리적인 일치성 확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주관성 요소도 제거된다.⁶⁴⁾ BPO는 데이터와 전자적으로 매치는 시점에서 지급은 즉시적이다.⁶⁵⁾ 따라서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서류심사기준과 일치성 기준에 대한 논쟁은 해소될 것이다.

BPO 도입으로 은행은 기업에게 거래 초기, 즉 매매계약이 서명되었을 때부터 공급체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혁신은 공급체인금융의 범위를 위험완화 및 선적 전 금융서비스로 까지 확대한다.⁶⁶⁾ BPO를 이용하여 수출업자는 신용위험 관점에서 매수인으로부터 그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⁶⁷⁾ BPO는 또한 경제의 중요한 분야인 SME(중소기업) 시장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은행에게 제공한다.⁶⁸⁾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URBPO는 BPO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향후 이들 규칙은 궁극적으로는 화환신용장이 수십 년 동안 누려왔던 것과 비슷한 위치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있다. 첫 번째는 기술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들

62) 상계논문, p. 423.

63) *Ibid.*, p. 5.

64) David Henna, "Bringing the Bank Payment Obligation to market", *DCInsight, Vol. No.3*, July-September 2010, p. 10. ; 채진익, 상계논문, p. 423. ; 채진익, 전자무역론, 도서출판 두남, 2012, p. 442.

65) SWIFT, "Report: Guaranteeing payments for open account trade", 2011. Dialogue Q3, p. 33.

66) SWIFT, "A new start Supply Chain Finance", 2013, p. 2.

67) Paul Johnson, "The Bank Payment Obligation: 21st Century Trade Settlement",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2013, 5, p. 23.

68) ICC, *op. cit.*, 750E, p. 5.

규칙은 BPO관련 데이터의 교환을 위해 이용되는 기초거래 매칭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와 관계없이 BPO거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이들 규칙은 ISO 20022 메시징 표준의 의무적 준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 그 자체가 항상 일관성 있고 정착된 산업표준에 따라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⁶⁹⁾

2. BPO 프로세스와 그 운용

BPO는 TMA를 통하여 설정된다. BPO 시스템을 기본 메커니즘을 요약하면 우선 매수인과 매도인은 데이터의 매칭을 목적으로 구매주문서 또는 매도주문서를 그들 자신의 은행을 통하여 TMA에 제출하여 베이스라인을 설정한다. TMA는 그 베이스라인 매치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 후에 BPO를 추가하는 경우, 매수인 은행은 TMA에 BPO 요청하고, TMA는 그 BPO를 설정하고 매도인 은행(수취은행)에 그 설정정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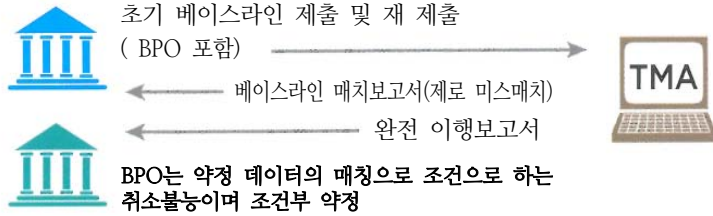
그 후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고 자신의 은행을 통하여 대금지급을 요청하면서 데이터 대조를 위해 관련 데이터 셋을 TMA에 제출하면, TMA는 그 데이터를 대조하여 매치가 되는 경우에는 그 매치결과 보고서를 채무은행(매수인 은행)에 발송한다. 채무은행은 TMA로부터 그 데이터의 매치보고서를 접수하면 수취은행에 이체·지급한다. 그러나 데이터 미스매치의 경우, 매수인 은행은 권리포기를 위해 매수인과 교섭하거나 또는 매수인의 권리포기를 거절하고 지급거절 통지를 할 수 있다.⁷⁰⁾

69) ICC, *op. cit.*, 751E, pp.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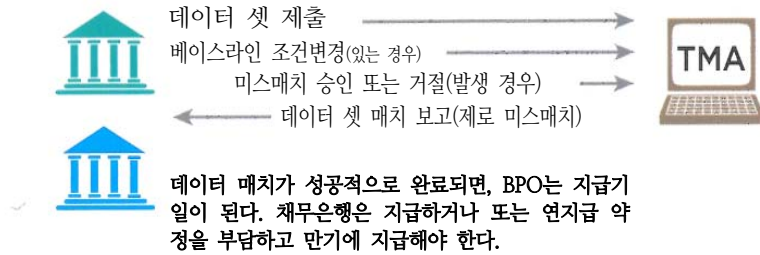
70) T. O. Lee Consultants Ltd., *op. cit.*, p. 4 수정·보완함.

<그림 1> BPO 거래 프로세스(Life cy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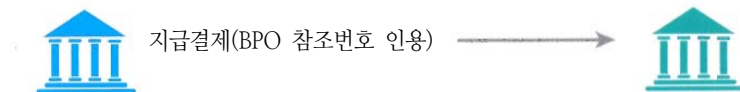
PO 데이터의 매칭에 근거한 BPO 설정



데이터 셋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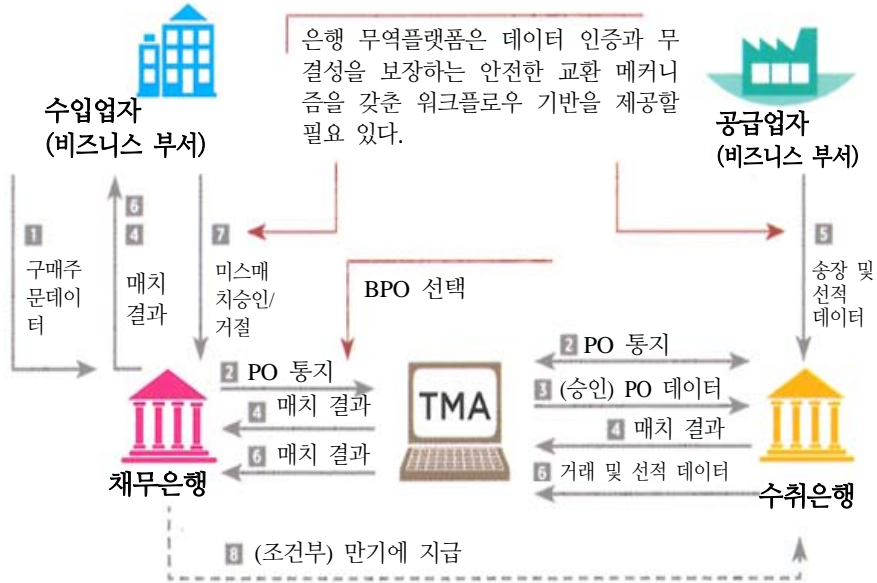


지급 및 결제



자료 : ICC, 751E, p. 63.

〈그림 2〉 TMA를 통한 BPO 흐름도



자료 : ICC, 751E, p. 147.

3. URBPO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UCP와의 비교하면 URBPO는 상대적으로 단문이고 간결한 규칙이다. URBPO의 조문은 상당한 양의 종이서류를 수동으로 처리하는 복잡성에 비해 자동화된 환경에서 데이터의 전자적 처리를 규율하는데 필요한 규칙에 있어 비교적 간결성(simplicity)을 반영하고 있다.⁷¹⁾

URBPO에서는 UCP 600과 달리 제시서류의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서류제시, 일치 또는 불일치 등의 표현 대신 데이터의 제출과 데이터의 매치 또는 미스매치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BPO 거래에서 데이터의 매치 여부의 기준은 URBPO가 아닌 TMA와 그 규정집으로 결정된다.

은행은 UCP 하에서 은행시스템을 통한 물리적 서류절차 및 서류심사 대신

71) ICC, *op. cit.*, 751E, p. 73.

에 공동의 TMA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 매치 보고서에 의존할 것이다.⁷²⁾ 따라서 BPO 거래에서는 시스템적으로 데이터의 매치가 이행되기 때문에 그 매칭여부가 즉시 결정되며, 그 결과통지 및 수리 여부 역시 즉시 통지하고 또 이를 확인 통지함으로써 대금지급을 위한 데이터의 매칭절차는 신속하게 종료된다. 여기에서 사람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의 매치기준과 그 매치 여부의 논란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운용시스템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URBPO는 UCP 600의 전자 버전인 eUCP 1.1과는 별개이며, BPO도 또한 전자신용장과는 다른 시스템이다. 그 적용에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⁷³⁾ URBPO는 독립적인 규칙인 반면, eUCP는 UCP의 보완규칙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eUCP는 데이터 교환에 대한 의무기준이 없다. 따라서 데이터는 전자매칭에 적합한 포맷으로 반드시 이용되지는 않을 것이다.⁷⁴⁾

UCP 600에서 수익자인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BPO에서 채무은행은 BPO의 수익자이자 매도인의 은행인 수취은행에만 지급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부주의(과실), 지급의무의 불이행, 및 기타 계약불이행 등에 대해 채무은행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를 위해 채무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⁷⁵⁾

그리고 BPO는 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며, 그 이전까지 검증된 적이 없다. BPO는 신용장제도와 달리 거래업무 및 소송 등에서 그 지침 및 참고 등을 위한 BPO에 대한 판례, ICC 은행위원회의 공식의견, ISBP 등과 같은 일치성 기준 및 그 해석기준이 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그들의 업무처리 및 법적 판단기준에 대해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도적 미흡과 판사, 배심원, 무역종사자 등 전문가는 URBPO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은 더 시간 소모적이고 비용은 더 들 수 있다는 점이다.⁷⁶⁾ 그러나 전자시스템으로 이루어지

72) *Ibid.*

73) T. O. Lee Consultants Ltd., *op. cit.*, p. 9.

74) ICC, *op. cit.*, 751E, pp. 73~74.

75) T. O. Lee Consultants Ltd., *op. cit.*, p. 11.

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무역시스템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예컨대 각국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 편의 및 관행, 그리고 저비용 구조 등 전통적인 관행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업무관행까지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URBPO의 향후 전망

우선 BPO의 도입은 은행 입장에서는 무역거래에서 수익원 확보 및 역할증대를 의미한다. 즉, 오픈 어카운트 거래에 대한 은행시스템의 이용으로 인한 수수료, 은행의 지급약정 기간의 위험인수에 대한 이자성 수수료, 그리고 이와 같은 무역거래에서 은행업무의 확대에 의한 외국환거래에서 외국환의 매매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외환수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기존 볼레로 시스템, GT NEXUS(중전 TradeCard) 및 아이텐트러스트 등 기존 다른 전자무역 솔루션으로 이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원의 상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자무역거래에 대한 고 비용구조와 복잡성을 해결하였다. 우선, 전자무역을 위해 글로벌 전자무역시스템의 별도 이용에 있어서 높은 가입비용과 거래비용은 전자무역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었다. 더욱이 기존 전자무역시스템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가입절차와 이용 절차상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또한 이질적인 환경 하에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비해 BPO는 기존 환경 하에서 기존 절차에 따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큰 장점이 있다. 즉,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 무역업자 측에서는 전통적 무역거래에서 서류발송에 대한 우편료를 절약할 수 있고, 또 기존 우편방식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BPO는 현실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위와 같은 글로벌 전자무역시스템과 달리, 거래 프로세스의 완전한 전자화 및 시스템화로 선화증권의 운용절차에 있어서 어려움이 해소된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무역당사자를 통합할 수 있는 SWIFT의 메시징시스템의 이용이다. 현 상황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

는 전자무역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또 그 발전단계도 다르다. 따라서 일부 국가 또는 일부 거래는 전통적인 종이기반으로 무역거래가 수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전자무역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런데 BPO에서는 이와 같은 전자무역의 장애를 기존 종이서류를 데이터화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BPO는 향후 일반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획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은행의 역할이 크며, 만약 은행이 BPO와 같은 무역거래를 외면한다면 무역거래에서 그들의 많은 역할을 잃을 수 있다.

2020이면 BPO는 신용장의 이용도만큼 널리 보급될 것이다.⁷⁷⁾ 본 저자는 현재 신용장거래 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본다.

VI. 결 론

국제무역에서 ICC와 SWIFT의 협력은 정체된 전자무역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ICC의 새로운 규칙의 제정과 기존 SWIFT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TSU 솔루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전자무역에서 장애가 되었던 고비용 구조와 불편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BPO 솔루션을 통하여 전통적인 신용장방식의 지급확약과 편리성 및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BPO는 오픈 어카운트로 개시하여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은행의 지급약정을 추가할 수 있다. BPO는 베이스라인의 조건에 따라 전자적 일치성을 조건으로 하는 수취은행에 대한 채무은행의 취소 불능한 지급약정을 제공한다.

URBPO는 그 전반적인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부분에서 기본적으로는 UCP 600의 기본 원칙을 도입했다. 즉 상용되는 용어의 정의, 독립추상성, 지체 없이 통지의무, 조건변경, 은행의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컴퓨터 소프트웨어 포함), 그리고 대금양도 등에서 유사한 맥락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운영에 있어서 시스템적 및 법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SWIFT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77) Andre Casterman, "The future of Bank Payment Obligation(BPO)", *DCInsight*, Vol. 19 No.3, July-September 2013, p. 4.

그러나 서류취급 및 서류심사, 대금지급을 위한 수취은행, 완전한 새로운 제조의 도입 등으로 인한 제도적 허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운용에 유의하여 조기정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URBPO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파악·해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적 유용성을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해 전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경제성 추구 및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BPO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URBPO를 취급하는 모든 전문가의 조기 전문지식 습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과 이를 주도하는 각국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처음으로 도입된 BPO와 그 규칙인 URBPO의 성공적인 운용으로 공급체인금융과 글로벌 전자무역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국제무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채진익, 전자무역론, 도서출판 두남, 2012.
- _____,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SWIFT의 TSU BPO의 도입과 과제”, 무역상무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9권, 2011.
- _____, “ICC/SWIFT의 협력적 공급체인금융 솔루션의 운용현황과 그 전망”, 무역연구, 한국무역연구원, 제9권 제4호, 2013. 9.
- Casterman, Andre, Andre, “Accelerating Global Trade Finance”, SWIFT, Jan. 23, 2012.
- _____, “The BPO update”, *DCInsight*, Vol.18 No.3, July-September 2012.
- _____, “The future of Bank Payment Obligation(BPO)”, *DCInsight*, Vol.19 No.3, July-September 2013.
- Dowse, Merlin, “Don't wait for your customer to ask about the BPO”, *DCInsight*, Vol.19 No.2, April - June 2013.
- Goparaju, M., Martin., K., Meyer and Chiu, K., “Five specialists analyze the new BPO rules”, *DCInsight*, Vol.19 No.2, April-June 2013.
- Hennah, D., “Bringing the Bank Payment Obligation to market”, *DCInsight*, Vol. No. 3, July-September 2010.
- ICC,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 Pub. 750E, 2013.
- _____, *THE ICC GUIDE to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 Pub. 751E, 2013.
- ICC URBPO Drafting Group, “Bank Payment Obligation: URBPO Draft 2”, 2012.
- Johnson, P., “The Bank Payment Obligation: 21st Century Trade Settlement”, *Treasury Insights for Total Connectivity*,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2013, 5.
- Marchal, R., “The Trade Services Utility: latest developments”, *DCInsight*, Vol.16 No.1, January-March 2010.
- Meynell, D., “The BPO: a banker's perspective”, *DCInsight*, Vol.18 No.2,

Apr-June 2012.

SWIFT, "A new start Supply Chain Finance", 2013.

_____, "The Value of SWIFT to the Financial Supply Chain", Issue 7 Q1 2012.

_____, "Report: Guaranteeing payments for open account trade", 2011. Dialogue Q3.

_____, "A new start Supply Chain Finance", 2013.

_____, "Supply Chain Finance for Corporates: BPO use cases scenarios and samples", 2012.

_____, "Trade and Supply Chain : Supply Chain Finance for Corporates", August, 2012.

T.O.Lee Consultants Ltd., "Introduction to and Comments on Bank Payment Obligation(BPO)", 2011. 9.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URBPO 750E

Chae, Jin Ik

This paper is to review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URBPO 750E) which were developed by the Banking Commiss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The rules were unanimously adopted during Lisbon meeting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on April 17th, 2013 and taken effect as of July 1, 2013.

A BPO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given by an Obligor bank to a Recipient bank to pay a specified amount under the condition of a successful electronic matching of data or acceptance of mismatches. It is an alternative instrument for trade settlement, designed to complement existing solution and not to replace them(ICC,750E). The BPO enables banks to provide sellers and buyers with advanced risk mitigations and enhanced financing services.

The BPO will improve trade processing efficiency such as increased transaction times, reduced handling cost, and others. It is believed that the BPO will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Supply Chain Finance in international Trade.

So, This study will review the provisions and application of the URBPO 750E based on documentary materials including swift com and icc.org and so on.

Key Words : TSU, BPO, URBPO